

#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 Characteristics of Child Friendly City Planning of German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이선주 Lee Sunju\*\*, 김성길 Kim Sung-Gil\*\*\*, Frank Eckardt\*\*\*\*

### Abstract

Currently, ninety-six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participating in UNICEF's Child Friendly City (CFC) project. UNICEF emphasizes the role of urban planning to realize a CFC; however, Korea only focuses on the welfare of a CFC.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y's CFC initiative and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FC in Korea. A literature review was used in this research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a CFC. Herein, we suggest three implications based on the German CFC initiative to establish a domestic CFC. First,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develop appropriate urban planning techniqu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ights of child participation, legally. Third, a CFC initiative needs to be divided into "child friendly city planning" and "youth friendly city planning."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will become the key factors to establish a child-friendly environment in Korea in the near future.

Keywords: UNICEF's Child Friendly City, Child Friendly Urban Planning, UN-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의 기본 집단인 각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16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학습 시간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방과후 놀 권리를 보장받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외 2019). 게다가 도시 내 놀이터, 녹지 등 아동을 위한 공간도 부족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이효진 2014, 1).

정부는 2013년 아동실태조사 이후 놀이 문화가 아동의 생활공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아동의 참여권리 및 놀이·여가권리의 보장'을 주요 정책으로 포함한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CFC) 사업

\* 본 논문은 이선주(2019)의 박사학위 논문 "Die kinder- und jugendfreundliche Stadtentwicklung in Korea"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박사(제1저자) | Ph.D., Bauhaus-Univ.-Weimar | Primary Author | mocksha@naver.com

\*\*\* 공주대학교 교수(교신저자) | Prof., Kongju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 sgkim@kongju.ac.kr

\*\*\*\*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교수(교신저자) | Prof., Bauhaus-Univ.-Weimar | Corresponding Author | frank.eckardt@uni-weimar.de

을 토대로 아동 정책 실행의 기반을 조성할 것을 권장했다(관계부처 합동 2015). 현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96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44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sup>1)</sup>), 아동의 권리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미미하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아동친화와 아동의 참여는 아직 생소한 주제이며, 이와 관계된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 및 사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신정엽(2018)은 국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평가지표 개발과 정책 및 규정,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동친화도시의 대중화와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도시입지, 도시계획, 도시요소’ 등 도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선(2013), 박효숙, 이우민, 김승남, 김재철 외(2017), 최진호, 김아연(2019)은 마을설계 및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 측면에서 소수 아동의 참여 및 연구 대상지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를 모든 장소와 지역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아동친화도시 연구 및 사업이 초등학생에게 편향되어 있어 중·고등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공통된 한계를 지적했다.

즉, 현재 국내에는 아동친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 연구 또한 개별적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난 20년간 독일이 실행해온 아동친화 도시계획 추진과정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향후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수립 방향 및 확장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문헌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범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루어진 1989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정의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 계획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독일 내에서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함께 고찰해 공통되는 특징을 파악했다. 셋째, 독일의 특징과 한국의 현황을 비교해 독일의 사례가 한국 아동친화 도시계획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찾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했다.

## II.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정의 및 추진의 중요성

### 1. 아동·어린이·청소년의 정의

아동,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은 국내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환경보호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은 만 9-24세로 규정한다(국가법령 홈페이지<sup>2)</sup>).

본 논문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어린이’를 초등학생,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했다.

1) <http://childfriendlycities.kr/> (2020년 5월 1일 검색).

2) <http://www.law.go.kr/> (2020년 4월 30일 검색).

## 2.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정의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비준한 196개국의 정부와 당국의 지자체가 이 협약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4개 조항, 즉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차별 원칙(제2조)', 아동에게 관계된 사항을 결정할 때 아동을 먼저 생각하는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을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6).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실현과 더불어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지자체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7). 아동친화도시는 특별히 도시에 사는 아동의 안전한 거주와 성장, 아동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함으로써 일반 도시와 차별화된다(신정영 2018, 402). 따라서 아동친화도시에서의 '도시'라는 용어는 아동의 교육, 권리, 복지, 치안 등 광범위한 지원을 함의하고 있는 '사회'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이 제시한 10가지 구성 요소와<sup>3)</sup> 각 요소에 해당하는 점검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항목은 열 번째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으로는 교통시설물이나 위험단속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놀이터와 공원 등 아동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의 확보를 요구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40).

Degünther(2008, 145)와 Lehmann and Apel(2015, 43-44)은 아동친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놀이나 여가 공간과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 내, 혹은 가까운 주변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과 녹지와 더불어 아동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자연공간을 중요한 조성요소로 언급했다. 특히, Lehmann and Apel(2015, 43-44)은 이러한 장소를 '도시 정글'로 표현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아동친화의 기본조건은 어른이 진지하게 아동의 의견과 소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바람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Olloz 2010, 14). 현대의 아동은 기존 세대와 비교해 육체적·정신적 발달 속도가 빠르고 정보화와 세계화로 어린 나이에 정치와 사회 관련 주제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식은 물론 감각과 느낌으로도 정책을 이해한다(Hurrelmann 2001, 6; Meinhold- Henschel 2007, 10). 이와 함께 어른의 도움이 있다면 학령기 전의 아이들 역시 도시계획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Schröder 1996, 24-25).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참가자들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는 과정이다. 따라서, 아동이 프로젝트의 시작뿐

3) 지자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사무국이 제공한 구성 요소는 9개로 (1) 아동권리 전담부서, (2)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3)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4)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5) 아동의 참여체계, (6)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7) 아동권리 옵부즈퍼슨, (8) 아동영향평가, (9)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해 10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만 아니라 시행 과정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아동 참여의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Olloz 2010, 14).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크게 아동의 참여와 도시 내 자유로운 활동공간 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모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내 아동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여가 활동 공간과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어른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던 기존의 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동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는 도시계획법으로 볼 수 있다.

### 3. 아동친화 도시계획 추진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정의를 토대로 아동의 참여, 놀이·여가 공간과 자연환경 확보, 이동성 개선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아동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결핍을 이해하고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다(Olloz 2010, 14). 이 과정에서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감정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고무한다(BMFSFJ 2013, 110). 또한, 아동은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책임감 있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Richter 2002, 7-8). 반면 참여의 제한으로 아동의 관심사와 요구가 사회문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아동이 다음 부양 세대가 되어 느끼는 부담감과 반감이 증가할 수 있다. 조속해진 현대의 아동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

고 이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Hurrelmann 2001, 6; Meinhold-Henschel 2007, 10).

두 번째, 아동은 자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로운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창의성과 책임감을 배운다(Hüther 2008, 15). 특히, 신체 활동은 아동의 인지력과 언어의 발달, 감성 발달과 사회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Kühnert 2007, 22), 더 나아가 아동의 비만과 자세결함을 예방한다(Lehmann and Apel 2015, 28). 성인 비만의 80%가 아동비만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동의 건강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손실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2). 또한,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인도 자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다(Kaplan and Kaplan 1989, 193-194; BfN 2013, 30). 반면, 자연이 결핍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놀이를 하는 아동의 경우 불안장애, 섭식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Weber 2010). 자연이 가진 치료능력의 예로, Kuo and Taylor(2004, 1580-1586)는 녹지 공간이 아동 개인의 성향이나 거주지,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만 5-18세 아동의 ADHD 상태를 호전시켰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동은 자연에서의 놀이를 통해 독립심을 배우며 이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창의력과 책임감은 물론 생태계의 중요성과 윤리의식을 배워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진다(Hüther 2008, 25).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놀이 및 여가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도시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기후 개선이 가능해진다(BfN 2013, 30). 이와 함께 아동에게 친화적인 주거환경은 도시와 지역의 출산율을 급

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Bujard and Scheller 2016, 101-136).

세 번째,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 가능성은 아동, 부모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신정엽 2018, 409). 오늘날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 내 교통사고와 범죄에 따른 위험 때문이다(Hofmann 2008, 99). 그러나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는 부모나 동행인이 없을 때 놀이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낯선 또래와도 다양하게 어울린다. 거리상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지만,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간과 횟수 또한 증가한다(Daschütz 2006, 260-267). 다시 말해, 불평등한 이동 가능성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가져야 할 평등한 발달의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기존의 불평등한 이동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한 국가의 안녕에 기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 III.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과 한계

#### 1.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 발전과정

독일은 1953년 유니세프에 가입했다. 그러나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독일 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몇몇 기업과 상인들이 획일화된 놀이터의 구조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비영리 독일 아동 후원 기관(Deutsches Kinderhilfswerk e.V.)을 설립한 1972년 이후이다. 이 기관은 시소, 그네, 모래사장

으로 정형화된 놀이문화 대신 어린이가 스스로 새로운 놀이를 개발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BfN 2008, 99-103).

이와 관련하여 1974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의 내무부는 독일 연방주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규정 제9조에 준거해 놀이터 조성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놀이터 조성계획(Spielplatzbedarfsplanung)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실행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지침으로 정했다(Stadt Bochum 2008, 22).

198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1991년 독일 정부는 어린이·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KJHG)을 개정했다. 특히, 제80조 아동지원계획(Jugendhilfeplanung)의 개정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때 담당자가 아동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Stadt Bochum 2008, 21).

다음 해 1992년 독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UNICEF Germany<sup>4</sup>), 1999년 라인란트팔츠주(Rheinland-Pfalz)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독일의 어린이·청소년지원법에 준거해 ‘놀이기본계획(Spileitplanung)’을 개발했다. 이 도시계획기법은 아동의 의견이 기존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거버넌스 구축 및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라인란트팔츠주는 2000~2002년 사이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이 놀이기본계획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MBEJrlp 2004, 32).

2000년 초반 독일 정부는 국가추진계획(Nationaler Aktionsplan)으로서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독일 2005-2010(Fü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

4) <https://www.unicef.de/informieren/ueber-uns/fuer-kinderrechte> (2020년 5월 1일 검색).

2010)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사회복지 및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도시 계획 영역에서는 아동친화적인 학교, 여가, 자연 공간의 확보 및 조성을 주요 실행과제로 명시하고 있다(BMVBS 2010).

또한, 2008년 독일 자연 보전국(Bundesamt für Naturschutz)은 오늘날 도시 내 자연환경의 결핍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도시의 아동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아동의 운동량 증가와 심리적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학제 간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독일 외무청과 내무부는 2009년부터 7년간 청소년의 도시계획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기법, 추진 방향, 협력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65개 도시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BBSR 2016). 더불어 독일 정부는 2017년 아동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26년 만에 ‘어린이·청소년지원법(KJHG)’을 ‘어린이·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 KJSG)’으로 개정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의 참여, 아동보호, 요보호아동의 지원보장을 추가로 명시했다(장주리 2017, 107).

이밖에도 2012년 도시 하나우(Hanau)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독일 내 15개 도시와 지역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sup>5)</sup>

## 2.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 추진의 어려움

오늘날 교통 문제로 인해 도시의 아동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동에게 적절한 대체 공간 대신 놀이터라는 보호구역

을 제공했다. 이에 도시 내 놀이터는 분리된 공간, 즉 섬이 되었으며, 아동은 놀이 공간을 통해 더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Hofmann 2008, 99; Ohl 2009, 21).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아동을 배려한다면, 아동의 공간을 어른 대신 아동의 욕구에 맞춰 조성하고(Lehmann and Apel 2015, 167), 아동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MSFFG 2008, 7). 하지만 사회적 강자인 어른은 의사결정 시 아동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오늘날 도시에 사는 아동이 대면한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는 경우가 적다(NMSFFG 2008, 10; Ohl 2009, 2-3). 특히, 도시계획가, 건축가, 도시계획 관련 행정기관의 무관심은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의 체계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 정책과 아동의 참여 방법 개발이 불가해지기 때문이다(Schroder 1996, 23; Ohl 2009, 344).

최근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의 하나로 아동을 참여시키는 문화가 생기고 있지만,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참여 방법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성격이 다른 두 행정기관, 즉 도시계획과 아동 복지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Lehmann and Apel 2015, 53).

Stange(2007, 39)는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에 대상 지역의 시장, 프로젝트 총책임자, 행정기관, 정치가,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눈높이에서 참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

5) <https://www.unicef.de/kinderfreundliche-kommunen> (2020년 5월 1일 검색).

다(Ohl 2009, 5). 이에 아동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전략은 학교와의 협업이다. 학교는 아동이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Lehmann and Apel 2015, 264),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NMSFFG 2008, 12). 그러나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업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교사가 느끼게 되는 업무적 부담이 크고(Ohl 2009, 359), 사회 통념상 학교는 아동이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아 학교와의 협업이 쉽지 않다(Stange 2007, 36).

이밖에도 정치가의 관심과 지원은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도시와 지역에 알리고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Ohl(2009, 88)은 정치가가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지역 내 부모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만 보는 경우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자들이 아동의 참여능력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아동을 도시계획에 참여시키는 경우 오히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Lehmann and Apel 2015, 293).

#### IV. 국가 간 아동친화 도시계획 비교와 시사점

앞서 살펴본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발전과정을 통해 네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독일은 1970년 초 시민의 주도로 아동의 성장과 놀이·여가 공간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놀이 환경을 개선해왔다. 두 번째, 독일은 아동의 권리, 특별히 참여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분야를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

는 주요 분야로 인식하고, 아동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기법을 개발했다. 세 번째,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정부 기관의 주도로 청소년의 도시계획 참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네 번째, 한국과 비교해 유니세프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가 적다.

다음으로 독일 내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업 추진과 정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관심 부족, 미흡한 협력체계, 전략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므로 결정권자인 어른의 관심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전문가와 시민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늘날 도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공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고 아동의 의견을 기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을 이끌어가는 도시계획 전문가나 도시계획 관련 행정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 따라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법 제정 등 행정적, 정치적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략적으로 실행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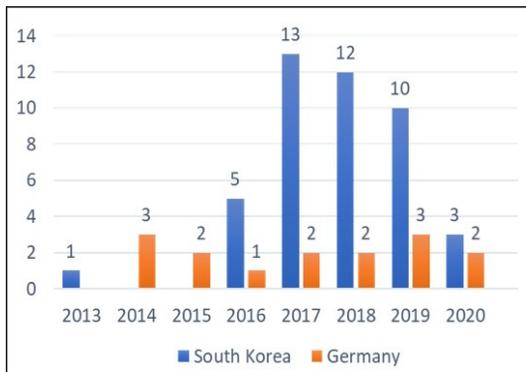
이처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한국과 비교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이 미약하다. 두 번째, 독일은 자체적으로 ‘놀이기본계획’ 기법을 개발했다. 세 번째, 법적 근거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네 번째, 정부 기관의 주도로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독일과 한국 간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 1. 독일과 한국의 아동친화 도시계획 비교

###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의 아동친화 관련 사업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Figure 1>에서 알 수 있듯 2016년 이후 유니세프 아동친화 인증을 받은 국내 지자체 수가 증가했다. 이는 국내 지자체가 2013년 성북구의 첫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정부의 권고를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을 국내외적 흐름으로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91년 유엔권리협약 비준 이후에도

**Figure 1** \_The Number of Child Friendly Cities in Korea and Germany Certified by UNICEF



Source: Unicef Korea(<https://www.unicef.or.kr/child-rights/initiative/child-friendly-cities.asp>); Unicef Germany (<https://www.unicef.de/kinderfreundliche-kommu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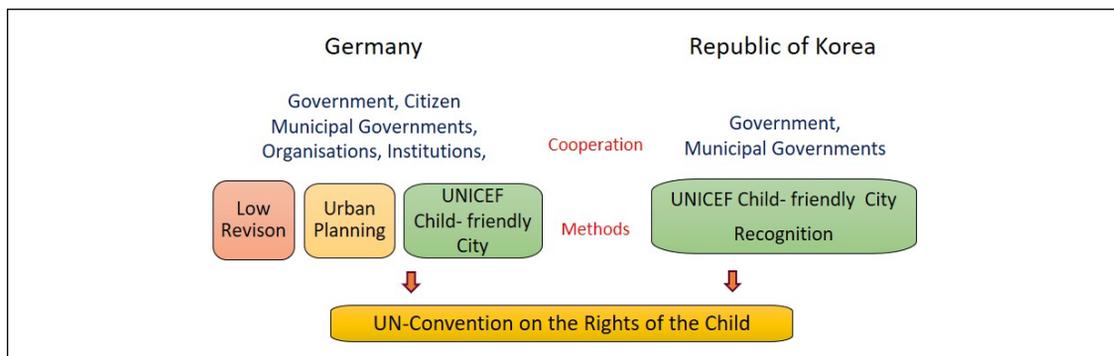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제공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지자체의 아동 정책 실행기반을 조성하는데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아동친화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한국과 비교해 큰 반향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독일은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와 함께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와 사업을 지원해왔다. 즉, 독일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의미는 <Figure 2>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보다 독일 내 유니세프에 사업에 두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놀이기본계획(Spielleitplanung)

유니세프는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놀이·여가 공간 및 자연환경 확보처럼 아동친화도시의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 분야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9). 그러나 현재 국내 아동친화도시 관련 연구와 사업

**Figure 2** \_Strategies for Performing the Rights of Children



은 아동의 복지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완주군과 같이 아동의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적 놀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목표를 가지는 지자체가 있으나(전라매일 2020),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 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독일은 아동친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와 지역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시계획기법 ‘놀이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기법은 전문가와 아동이 함께 도시와 지역 내 놀이와 만남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잠재적 장소와 토지를 찾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기존 공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놀이기본계획은 도시와 지역이 사업 초기에 구축해야 할 협력체계, 즉 지자체의 행정기관과 지역의 도시계획가, 교육가, 시민 등을 주체로 한 거버넌스 구축 및 예산 확보와 각 관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MBFJrlp 2004,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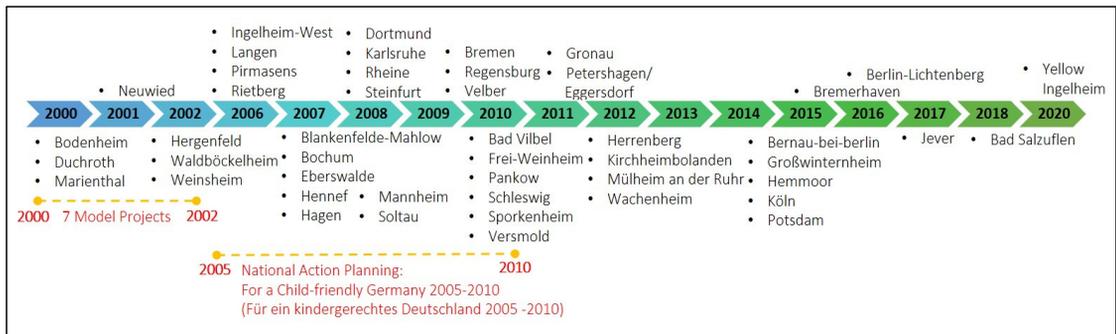
<Figure 3>에서처럼 놀이기본계획은 2년간 라인란트팔츠주의 7개 시범 도시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40여 개의 도시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독일 내 아동친

화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와 지역이 놀이기본계획을 통해 아동친화 도시계획이라는 생소한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도시계획기법의 개발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정부가 국가추진계획으로써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독일 2005-2010’을 추진한 시기에 놀이기본계획을 도입한 도시와 지역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지원이 아동친화에 대한 도시와 지역의 관심을 높였으며, 아동친화와 관련해 도시계획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독일 사회가 적극적으로 놀이기본계획을 도입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법적 지원

독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제31조(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9, 23), 연방법인 사회법전 제8권의 제11조 제3항에 근거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놀이 및 여가를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참여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유럽법 제24조의

Figure 3\_ German Cities with Implementation of Playground Planning Method ‘Spilleitplanung’



Source: MBFJrlp 2004, 97; Abt and Hillmann 2011, 33; Stadt-Kinder(<https://www.stadt-kinder.de/familienfreundliche-stadtplanung/referenzliste-familienfreundliche-stadtplanung>); Yellow-ingelheim(<http://yellow-ingelheim.de/projekte/spilleitplanung>).

제1항과 제2항, 연방법 사회법전 제8권 제1조와 제8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의 관심 욕구가 존중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아동의 참여 권리는 건축법전 제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건설관리계획(Bauleitplanung) 수립 시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Deutsches Kinderhilfswerk e.V. 2019, 12-14). 이와 함께 제3조에서는 새로운 사업과 개발추진 시 다양한 해결책을 얻고 사업의 영향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목적에 대해 바로 일반에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반에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했다(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sup>6)</sup>).

Schröder(1996, 23)는 1990년대에 아동의 참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하며, 문제는 법이 아니라 도시계획가의 무관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체결 30주년을 맞은 2019년 11월 독일 법무부는 아동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아동권리의 헌법화를 추진을 위한 법안 초안을 연방의회(Bundestag)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학술지원처(Wissenschaftliche Dienste)는 법무부의 초안이 기존의 아동권리 강화에 이바지하기 부족함을 지적하고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방향의 수정안을 촉구했다(Deutscher Bundestag 2019).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라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복지의 보장, 제2조 제2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 이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5조에서는 아동의 체력 및 여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제2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정하고 있다(국가법령 홈페이지<sup>7)</sup>). 그러나 도시와 건축 관련법에서 아동의 참여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4) 청소년 참여

독일 내 많은 도시와 지역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업 과정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할 수 있는 전략 및 기법의 고려가 미흡했다(BMVBS 2010, 9). 이에 독일 외무청의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B)<sup>8)</sup>는 독일 내무부의 연방건설공간계획청(BBR)<sup>9)</sup>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65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도시참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진행된 첫 사업 ‘청소년이 만드는 도시(Jugend macht Stadt)’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프로젝트 기금을 운용해 구상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2년간 진행된 프로젝트 ‘청소년의 도시 공실 재생사업(Jugend belebt Leerstand)’을 통해 청소년들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새롭게 개조해 도시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2012년에 추진된 ‘젊

6) <https://www.gesetze-im-internet.de/> (2020년 5월 1일 검색).

7) <http://www.law.go.kr/> (2020년 5월 1일 검색).

8)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BMUB).

9)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BBR).

은 에너지(Young Energies) 사업결과 청소년에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도시와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 쌓인 경험과 새롭게 개발된 참여기법은 2013부터 3년간 실행된 ‘청소년.도시.연구실(Jugend.Stadt.Labor)’ 사업을 통해 8개 도시에 시범 적용되었다. 그 결과 사업을 추진한 다수의 도시에 청소년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참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관련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BBSR 2016).

이처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기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는 청소년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 사례와 국내 현황에서 알 수 있듯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어린이에게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 2.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와 사업의 초점이 아동의 복지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독일은 도시계획 및 법률 개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우리나라와 비교해 유니세프의 사업에 두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독일이 아동친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놀이기본계획’이 독일 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실행과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아동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약 100개 지자체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한국형 ‘아동친화 도시계획기법’을 주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아동권리의 헌법화를 추진하는 독일의 움직임은 사회적 관심만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독일의 선진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도시계획 참여가 도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친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참여 방법과 프로젝트가 함께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친화 도시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초기부터 ‘어린이친화 도시계획’과 ‘청소년친화 도시계획’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전문가들이 청소년을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해 온 독일의 특징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 수립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조항을 토대로 도시계획이 아동의 참여, 안전한 거리, 놀이·여가 및 자연환경 확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아동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여가·자연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방법을 아동친화 도시계획으로 정의했다. 이어 그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통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아동에게 위험한 도시공간의 개선 및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아동의 참여를 통해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난 20년간 독일이 추진해온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비교해 독일 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추진이 미미하다. 둘째, 독일은 아동 참여를 위한 도시계획기법 ‘놀이기본계획’을 개발했다. 셋째, 독일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의 헌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부 기관의 주도로 7년간 청소년의 도시계획 참여에 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됐다.

이처럼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가지는 특징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한국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과 비교해 유니세프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분야의 중요성이 조명돼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과 확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적절한 도시계획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법적인 지원 또한 아동의 참여권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끌어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업이 어린이에게만 편향되지 않도록 ‘어린이친화 도시계획’과 ‘청소년친화 도시계획’을 구분해 전문가가 청소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작점을 모색한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제시한 시사점이 향후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아동친화 도시계획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큰 테두리에서 독일의 특징을 살폈다. 따라서, 향후 제시된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져,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관계부처합동. 2015. 제1차(15'~19) 아동정책 기본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Various Ministries. 2015. 1st(15'~19) Comprehensive plan for children and youth.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_\_\_\_\_. 2018.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세종: 보건복지부.  
\_\_\_\_\_. 2018.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obesity in Korea.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국가법령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20년 4월 30일 검색).  
Korean Statute. <http://www.law.go.kr/> (accessed April 30, 2020).
4.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외.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Ryu Junghee, Lee Sangjung, Jeon Jina, Park Sekyung, Yeo Yujin, Lee Juyeon and Kim Jimin et al. 2019. *A Comprehensive Survey of Children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5. 박효숙, 이우민, 김승남, 김재철, 이경환. 2017. 어린이 참여 마을설계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93권: 149-167. <http://doi.org/10.15793/kspr.2017.93..010>  
Park Hyosook, Lee Woomin, Kim Seungnam, Kim Jaecheol and Lee Kyunghwan. 2017.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hildren's participation design workshop for child-friendly neighborhood: Focusing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93: 149-167. <http://doi.org/10.15793/kspr.2017.93..010>
  6. 신정엽. 2018.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child-friendly city)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권, 3호: 399-413. <http://doi.org/10.25202/JAKG.7.3.10>  
Shin Jungyeop. 2018.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child-friendly city on the perspective of urban geograph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7, no.3: 399-413. <http://doi.org/10.25202/JAKG.7.3.10>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 (2020년 5월 1일 검색).  
Unicef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http://childfriendlycities.kr> (accessed May 1, 2020).
  8.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initiative/child-friendly-cities.asp> (2020년 4월 28일 검색).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initiative/child-friendly-cities.asp> (2020년 4월 28일 검색).
  9. \_\_\_\_\_. 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_\_\_\_\_. 2019. *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Handbook*. Seoul: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10. 이효진. 2014. 초등학교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Lee Hyo Jin. 2014. *A Study on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Composi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S. diss., Yonsei University.
  11.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권, 106-11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Jang Juri. 2017. The Reform of Child and Youth Support Law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106-111.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2. 전라매일. 2020. 완주군, 장애아동 놀이터 조성. 2월 16일, <http://m.jlmaeil.com/view.php?idx=178348> (2020년 6월 7일 검색).  
Jeollamaeil. 2020. Creating a playground for disabled children in Wanju-gun. February 16, <http://m.jlmaeil.com/view.php?idx=178348> (accessed June 7, 2020).
  13. 최진호, 김아연. 2019.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 환경 분석: 성북구 모랫말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7권, 6호: 87-102. <http://doi.org/10.9715/KILA.2019.47.6.087>  
Choi Jin-Ho and Kim Ah-Yeon. 2019. Analysis of child-friendly environment in a neighborhood park in child-friendly city: Focused on the Moraetmal Neighborhood Park of Seongbuk-gu.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7, no.6: 87-102. <http://doi.org/10.9715/KILA.2019.47.6.087>
  14. 허윤선. 2013. 어린이 공간환경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ue Younsun. 201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Built Environment Design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 Abt, J. and Hillmann, C. 2011. *Kinder-und Jugendinteressen in der räumlichen Planung: das neue Planungsinstrument "Spilleitplanung" am Beispiel von Berlin*. Berlin: Universitätsverlag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Berlin.  
Abt, J. and Hillmann, C. 2011. *Children's and Youth interests in spatial Planning: the new planning Instrument "Spilleitplanung" Using the Example of Berlin*. Berlin: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Press.
  16.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and Raumforschung (BBSR). 2016. *Jugend.Stadt.Labor: wie junge Menschen Stadt gestalten*. Berlin: LaserLine Druckzentrum Berlin KG.  
Federal Ministry of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 German. 2016. *Youth.City.Lab: How young people shape the city*. Berlin: LaserLine Druckzentrum Berlin KG.
  17.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2008. *Kinder und Natur in der Stadt Spielraum Natur*. Bonn-Bad Godesberg: BMU.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2008. *Children and*

- Nature in the City Play Spaces*. Bonn-Bad Godesberg: BMU.
18.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2013. *Naturerfahrungsräume in Großstädten. Wege zur Etablierung im öffentlichen Freiraum*. Bonn-Bad Godesberg: BMU.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2013. *Nature Experience Spaces in big Cities. Ways to Establish yourself in Public Space*. Bonn-Bad Godesberg: BMU.
1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3. 14. *Kinder- und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Paderborn: Bonifatius GmbH.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13. 14. *Children's and youth report. Report on the living situation of young people and the performance of child and youth welfare in Germany*. Paderborn: Bonifatius GmbH.
20.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BMVBS). 2010. *Freiräume für Kinder und Jugendliche*. Calbe: Grafisches Zentrum Cuno.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 German. 2010. *Free Space for Children and Teenagers*. Calbe: Grafisches Zentrum Cuno.
21. Bujard, M. and Scheller, M. 2016. Einfluss regionaler Faktoren auf die Kohortenfertilität: Neue Schätzwerte auf Kreisebene für Deutschland.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Zeitschrift für Bevölkerungswissenschaft* 41: 101-136. <https://doi.org/10.12765/CPoS-2017-07de>  
Bujard, M. and Scheller, M. 2016. Influence of regional factors on cohort fertility: New estimates at district level for Germany.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Zeitschrift für Bevölkerungswissenschaft* 41: 101-136. <https://doi.org/10.12765/CPoS-2017-07de>
22. Daschütz, Petra. 2006. *Flächenbedarf, Freizeitmobilität und Aktionsraum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r Stadt*. Doktor diss., Technischen Universität Wien.  
Daschütz, Petra. 2006. *Space Requirements, Leisure Mobility and Space for Action by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the City*. Ph.D. diss., Technical University Wien.
23. Degünther, Henriette. 2008. Naturnahe spielräume in Rheinland-Pfalz—Flächenkategorie für große, extensiv genutzte spielräume in wohnungsnäe. In *Bundesamt für Naturschutz(BfN)*, 137-207. Bonn: Bad Godesberg.
- Degünther, Henriette. 2008. Near-natural play space in Rheinland—Pfalz—Area category for large, extensively used play spaces near the home. In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137-207. Bonn: Bad Godesberg.
24. Deutscher Bundestag. 2019. *Zur Aufnahme von Kinderrechten in das Grundgesetz*. Berlin: Deutscher Bundestag.  
German Bundestag. 2019. *To Include Children's Rights in the Basic Law*. Berlin: Deutscher Bundestag.
25. Deutsches Kinderhilfswerk e.V. 2019. *Beteiligungsrechte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Backnang: WirmachenDruck GmbH.  
[https://www.dkhw.de/fileadmin/Redaktion/1\\_Unsere\\_Arbeit/1\\_Schwerpunkte/3\\_Beteiligung/3.11\\_Studie\\_Beteiligungsrechte/Studie\\_Beteiligungsrechte\\_von\\_Kindern\\_und\\_Jugendlichen.pdf](https://www.dkhw.de/fileadmin/Redaktion/1_Unsere_Arbeit/1_Schwerpunkte/3_Beteiligung/3.11_Studie_Beteiligungsrechte/Studie_Beteiligungsrechte_von_Kindern_und_Jugendlichen.pdf) (accessed April 29, 2020).  
Deutsches Kinderhilfswerk e.V. 2019. *Rights of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Germany*. Backnang: WirmachenDruck GmbH.
26.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https://www.gesetze-im-internet.de> (accessed May 1, 2020).
27. Hofmann, Holger. 2008. Naturerfahrungen für Kinder in Kommunen – Veränderte Bedingungen und neue Wege. In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99-103. Bonn-Bad Godesberg: BMU.  
Hofmann, Holger. 2008. *Nature Experiences for Children in Municipalities - Changed Conditions and new Ways*. In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99-103. Bonn-Bad Godesberg: BMU.
28. Hurrelmann, Klaus. 2001. Warum die junge Generation politisch stärker partizipieren muss.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4, 3-7.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s://www.bpb.de/shop/zeitschriften/apuz/25933/partizipation-von-kindern-und-jugendlichen> (accessed April 28, 2020).  
Hurrelmann, Klaus. 2001. *Why the young generation has to participate more politically*. In *from Politics and Contemporary History* 44, 3-7.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s://www.bpb.de/shop/zeitschriften/apuz/25933/partizipation-von-kindern-und-jugendlichen> (accessed April 28, 2020).
29. Hüther, Gerald. 2008. Die Erfahrung von Natur aus der Sicht moderner Hirnforschung. In *Bundesamt für Naturschutz*

- (BfN), 15. Bonn: Bad Godesberg.
- Hüther, Gerald. 2008. The Experience of N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Brain Research. In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15. Bonn: Bad Godesberg.
30. Kaplan, R. and Kaplan, S. 1989. *The Experience of Natur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Kühnert, Natalia 2007. *Rolle der Mutter-Kind- Kommunikation für die aufmerksamkeitsregulativen Fähigkeiten im frühkindlichen Spiel*. Doktor diss.,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 Kühnert, Natalia 2007. *Role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for Attention-Regulating Skills in early Childhood Play*. Ph.D. diss., Ludwig-Maximilians-University of Munich.
32. Kuo, F. E. and Taylor, A. F. 2004. A potential natural treatment for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Evidence from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 no.9: 1580-1586. <https://doi.org/10.2105/AJPH.94.9.1580>
33. Lehmann, D. and Apel, P. 2015. *Freiräume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as Zusammenwirken von Produkt, Prozess und Strategie als mehrdimensionaler Handlungsansatz*. Doktor diss., Technische Universität Dortmund.
- Lehmann, D. and Apel, P. 2015. *Free Spa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Interaction of Product, Process and Strategy a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Ph.D. diss., Technical University of Dortmund.
34. Ministerium für Bildung, Frauen und Jugend Rheinland-Pfalz (MBFJrlp). 2004. *Spielplatzplanung - ein Weg zur kinderfreundlichen Gemeinde und Stadt*. Mainz: MBFJrlp.
- German Ministry of Education, Women and Young People in Rheinland-Pfalz. 2004. *Playground Planning Guide- a Way to a Child-friendly Community and City*. Ministry of Education, Women and Young People in Rheinland-Pfalz.
35. Meinhold-Henschel, Sigrid. 2007. Räume eröffnen im demokratischen Gemeinwesen. In *Bertelsmann Stiftung*, 9-17. Gütersloh: Publishing Company Bertelsmann.
- Meinhold-Henschel, Sigrid. 2007. Spaces open in the democratic community. In *Bertelsmann Foundation*, 9-17. Gütersloh: Bertelsmann.
36. Niedersächsisches Ministerium für Soziales, Frauen, Familie und Gesundheit (NMSFFG). 2008. GEMEINSAM: Workshop für Fachkräfte und interessierte Akteure aus den Bereichen Jugendhilfe, Stadtplanung, Grün- und Freiraumplanung. Dortmund: Niedersächsisches Ministerium für Soziales, Frauen, Familie und Gesundheit. <https://www.ml.niedersachsen.de/download/9690> (accessed May 5, 2020).
- Ministry for Social, Women, Family and Health Affairs of Lower Saxony. 2008. TOGETHER: Workshop for specialists and interested actors from the areas of youth welfare, urban planning, green and open space planning. Dortmund: Ministry for Social, Women, Family and Health Affairs of Lower Saxony.
37. Ohl, Ulrike. 2009. *Spielraumerweiterung. Institutionelle Rahmenbedingungen und Akteursstrategien in der großstädtischen Stadtteilentwicklung unter Einbezu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Doktor diss., Universität Heidelberg.
- Ohl, Ulrike. 2009.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Urban Planning. Institutional Frame and Strategies of Key Actors*. Ph.D. diss., University Heidelberg.
38. Olloz, Sebastian. 2010. Auf Augenhöhe 1.20m: Kinderfreundliche stadtentwicklung ist mehr als planung. In *COLLAGE* 4, no.10, 14-15. Bern: Stämpfli Publikationen Ag.
- Olloz, Sebastian. 2010. The city at eye level for kid: Child-friendly urban development is more than planning. In *COLLAGE* 4, no.10, 14-15. Bern: Stämpfli Publikationen Ag.
39. Richter, Ingo. 2002. Begrüßung. In *Bundeskongress: Partizipation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ls gesellschaftliche Utopie? Ideale-Erfahrungen-Perspektiven*, 7-10. Bonn: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Richter, Ingo. 2002. Welcome. In *Federal Congress: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Social Utopia? Ideals-Experiences-Perspectives*, 7-10. Bonn: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40. Schröder, Richard. 1996. *Freiräume für Kinder(t)räume! Kinderbeteiligung in der Stadtplanung*. Hemsbach: Druckhaus Beltz.
- Schröder, Richard. 1996. *Free Space for Children Dream! Child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Hemsbach: Printing house Beltz.
41. Stadt Bochum. 2008. *Spielplatzplanung Bochum*. Dortmund: Stadt Bochum.

City Bochum. 2008. *Playground Planning Bochum*. Dortmund: City Bochum.

42. StadtKinder. <https://www.stadt-kinder.de/familienfreundliche-stadtplanung/referenzliste-familienfreundliche-stadtplanung> (accessed April 28, 2020).

43. Stange, Waldemar. 2012. Von der Projektevielfalt zur Strukturentwicklung: Kinder- und Jugendpartizipation nachhaltig verankern. In *Dokumentation: Fachtagung Jugendbeteiligung in Brandenburger Kommunen*, 33-47. February 8. [https://mbjs.brandenburg.de/media\\_fast/6288/doku\\_fachtag\\_120208.pdf](https://mbjs.brandenburg.de/media_fast/6288/doku_fachtag_120208.pdf) (accessed May 1, 2020).

44. UNICEF Germany. <https://www.unicef.de/informieren/ueber-uns/fuer-kinderrechte> (accessed May 1, 2020).

45. Weber, Andreas. 2010. Kinder, raus in die Natur! In *Geo*, no.8/10, 94-108. Hamburg: Gruner & Jahr-Verlag.

Weber, Andreas. 2010. Children, out into nature! In *Geo*, no.8/10, 94-108. Hamburg: Gruner & Jahr-Verlag.

46. Yellow-Ingelheim. <http://yellow-ingelheim.de/projekte/spielleitplanung/> (accessed April 28, 2020).

- 논문 접수일: 2020. 1. 10.
- 심사 시작일: 2020. 1. 28.
- 심사 완료일: 2020. 6. 8.

---

## 요약

주제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 도시계획, 유엔아동권리협약, 어린이와 청소년 참여

현재 국내 96개의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아동친화도시는 그 초점이 복지에 맞춰져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해 온 독일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 수립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정부가 적절한 도시계획기법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법적으로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어린이친화 도시계획’과 ‘청소년친화 도시계획’을 구분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논문의 시사점이 향후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